

case
3

냉동 비건 베이컨

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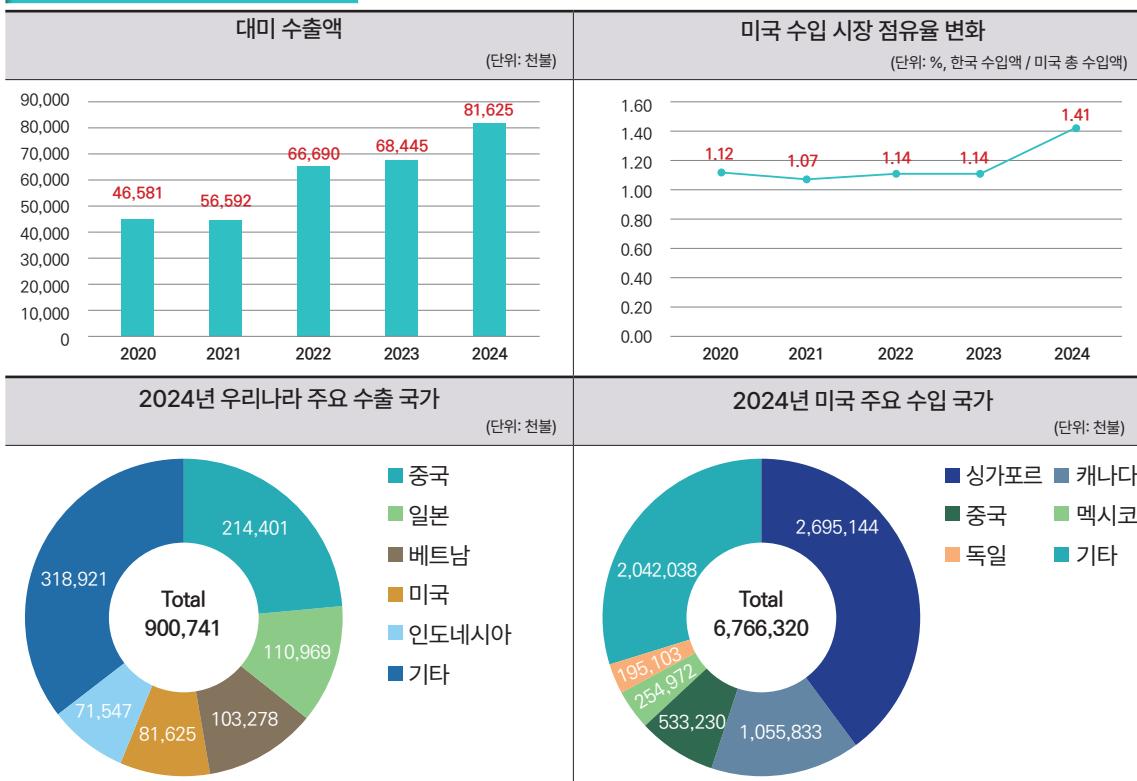
사례명	냉동 비건 베이컨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사례번호	NY N312216 (2020.06.15.)
사실관계	대두 단백, 옥수수 전분, 효모 추출물 등 여러 국가의 원재료가 대만으로 수입되어 대만산 대두 단백, 대두유 등과 함께 혼합, 가열, 절단, 냉동 및 포장된 후 미국으로 수출
쟁점 및 판정	<p>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</p> <p>대만에서의 공정(혼합, 가열, 절단, 냉동 등)으로 인해 각 원재료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단일 제품으로 변형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며,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</p>
근거법령	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 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

I 품목개요

품목정보

HS Code	제2106.90호
세율	한국 기본세율
	8~30%
	미국 기본세율
	0~10% or 종량세
	한-미 FTA 협정세율
	0%
한-미 FTA 원산지결정기준	<p>1. 제2106.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: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(제0805호, 제2009호 및 제2202.90호의 것은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</p> <p>2. 제2106.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.</p> <p>가.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(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.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</p> <p>나.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, 제2202.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. 다만, 단일 과실·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(single strength) 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%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.</p> <p>3. 제2106.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: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(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)에서 생산된 것</p> <p>4. 제2106.90호의 당시럽: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(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</p> <p>5. 제2106.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%를 초과하는 것: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(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%를 초과하는 제1901.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</p> <p>6. 제2106.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%를 초과하는 것: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(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</p> <p>7. 제2106.90호의 인삼 조제품: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(제1211.20호 및 제1302.19호의 것은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</p> <p>8. 기타: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</p>

제2106.90호 시장 정보



II 판정사례

사례명 [냉동 비건 베이컨]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사례번호 NY N312216 (2020.06.15.)

사실관계

요청자 Ice Box Foods Inc., CA. (대리인: John A. Steer Company)

제품명	• 냉동 비건 베이컨 (Frozen Vegan Bacon)
제품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물: 약 54% • 대두유: 17% (대만산) • 소금: 1% (대만산) • 기타 극소량 성분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효모 추출물 (프랑스산) - 설탕 (대만산) - 천연 고기향 및 훈제 향료 (독일, 미국, 프랑스산) - 식물 추출물 (캐나다산) - 프로테아제 (독일산) - 착색료 (일본, 독일, 인도산)
완제품 HTSUS	• 2106.90.9895

제조공정



- 상세공정
1. 대만에서 대두 단백 세척, 여과 및 탈수
 2. 기타 성분(대두유, 옥수수 전분, 식물성 단백질 및 기타 첨가물)과 함께 혼합
 3. 모양 성형 및 90°C에서 3.5시간 조리
 4. 절단(슬라이스) 및 소비자 요청 사양에 따라 유닛 포장
 5. -18°C에서 급속냉동
 6. 소매용 플라스틱 백(2.59kg x 12개)에 포장돼 미국 수출

쟁점사항

- ✓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및 분석



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검토

- ▣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에 따르면,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, 지워지지 않게,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
- ▣ CBP 『19 C.F.R. § 134』 규정은 『19 U.S.C. § 1304』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,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

-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: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변화 여부

❖ 참고 판례: *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, 69 CCPA 152, 681 F. 2d 778 (1982)*

- 그러나,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
❖ 참고 판례: *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, 3 CIT 220, 542 F. Supp. 1026, 1029 (1982), aff'd, 702 F.2d 1022 (Fed. Cir. 1983)*

-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(totality of the evidence)하여 이루어짐

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HQ W968434 (2007)*

❖ 참고 판례: *Ferrostaal Metals Corp. v. United States, 11 CIT 470, 478, 664 F. Supp. 535, 541 (1987)*

판정 결과

- ▣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원료들이 대만에서 혼합, 성형, 조리, 절단, 포장 등을 통해 최종 제품이 되었으며, 이 과정에서 각각의 성분은 정체성을 잃고, 새로운 조제품으로 변형됨
 - 다양한 성분이 단순 혼합된 것이 아니라, 열처리 및 성형을 거쳐 일관된 형태와 용도(베이컨 대체 식품)를 가진 새로운 제품으로 재구성됨
 - 이에 따라 본 제품은 대만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며, 이에 따라 원산지는 대만임

기타 의견

- ▣ 해당 제품은 『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(42 U.S.C. § 262)』의 적용 대상이며, 미국 식품의약국(FDA)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기 권함

결론

- ✓ CBP는 최종 제품이 대만에서 다양한 외국산 원재료를 혼합·가공하여 제조되었으며, 제조공정 중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함

 시사점

- 여러 원재료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식품류의 경우, 개별 원재료들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가 원산지판정에 중요한 요소임

 참고자료

- CBP Ruling NY N312216 (2020.06.15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12216>
- CBP Ruling (HQ) W968434 (2007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W968434>
- CBP 19 C.F.R. § 134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34>
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1304&num=0&edition=prelim>
- 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 (1982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8163/texas-instruments-inc-v-united-states/?q=Texas+Instruments%2C+Inc.+v.+United+States%2C+69+CCPA+151+%281982%29>
- 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 (1983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2283980/uniroyal-inc-v-united-states/>
- Ferrostaal Metals Corp. v. United States (1987), 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1504219/ferrostaal-metals-corp-v-united-states/?q=Ferrostaal+Metals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